##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160

발의연월일: 2021. 8. 23.

발 의 자:김예지 · 권명호 · 김희국

류성걸 · 김선교 · 송석준

정희용 • 추경호 • 김영식

구자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 규정으로만 두어서는 해당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·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제1항). 법률 제 호

##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 중 "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"를 "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장애인 문화예술 활동	제15조의2(장애인 문화예술 활동
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	의 지원) ①
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	
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	
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・지	
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	
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	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
하여야 한다.	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
	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
	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